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허7825 거절결정(상)
원 고	A
	중국
	송달장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동호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0. 3. 24.
판 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9. 8. 30. 2018원40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제40-2017-126262호/2017. 10. 11.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보수계, 복사기, 측정용 자, 발광식 표지, 스마트폰, 헤드폰, 사진용 카메라, 측량기구, 광학거울, 전선, 반도체, 온도조절장치, 소화기, 개인용 사고대비장구, 경보기, 안경, 축전지, 사진용 슬라이드

나.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갑 제1, 39, 40호증)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로 쉽게 인식되는 표장으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제39호증).

2) 이에 원고는 2018. 7. 3.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30.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

절결정을 하였다(갑 제40호증).

3) 원고는 2018. 9. 2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8원4041호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8.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1]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 서체의 알파벳 'P'와는 달리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위 조항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이 사건 심결문의 기초사실에는 심판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출원번호와 지정상품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와 같은 외관으로서 ①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진 좌측 2개의 모서리가 각진 형상을 띄고 있는 좌측의 변 부분, ② 좌측 변과 같은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으나 우측 2개의 모서리가 둥근 형상을 띄고 있는 세로로 긴 사각형 부분 및 ③ 사각형 안의 모서리와 짧은 변이 각각 둥근 형태의 사각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응 영문 알파벳 'P'와 유사하다.

2) 즉,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를 어느 정도 도안화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반원 부분을 모서리가 둥근 세로로 긴 사각형 정도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위 표장을 볼 때 간단하고 흔한 영문 알파벳 'P'의 의미 이상으로 인식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테니스 라켓', '가정용 빗자루', '중국 식칼' 등 새로이 창작된 도형으로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특히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회사 C의 '흔글 2007' 및 D의 'word', 'powerpoint' 등에 포함된 아래의 서체의 영문 알파벳 'P'에 '기울임' 또는 '진하게'를 적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출

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유럽, 호주 등지에서 각각 식별력을 인정받아 최종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Agency FB	

4)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알파벳 'P'를 약간 도안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와 같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도안화된 영문 알파벳 'P'와 관련된 표장을 원고로 하여금 독점하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김광남

판사 정희영